

What is an apostille?

What is an apostille for?

Who can issue an apostille in the United States?

How to obtain an apostille?

How long does it take to obtain an apostille by mail?

How much does it cost to obtain an apostille?

Is there another way to quickly obtain an apostille?

Can a document be presented in a foreign language?

Apostille samples

Q. WHAT IS AN APOSTILLE?

A. An apostille (French word meaning *notation*) is a standard certification provided under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1961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isl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s* for the purpose of authenticating documents for use in foreign countries. The treaty was ratified by the United States on Sept.1, 1981. The apostille is formatted in numbered fields that allow data to be understood by the receiving country regardless of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issuing country.

Q. WHAT IS AN APOSTILLE FOR?

A. Apostille is a form of certification of a document (e.g. Birth Certificate) intended for use in a country other than where the document was issued. It is a specific and simplified form of authentication of a document compared to a regular "multi-step hierarchical certification procedure" for authentication and

legalization, including certification by the Authentication Office of the Department of State and legalization by the embassy or consulate of the foreign country where the document is to be used. Apostille is introduced as an instrument for foreign certification among countries that have joined the 1961 Hague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s. Documents destined for use in participating countries and their territories should be certified by one of the officials in the jurisdiction in which the document has been executed. Said official must have been designated as competent to issue certifications by "apostille" as provided for by the 1961 Hague Convention.

Q. WHO CAN ISSUE AN APOSTILLE IN THE UNITED STATES?

A. It depends on a document, and a state in which the document is to be apostilled. Court papers usually are supposed to be apostilled in the court in which they are issued. State official, military and other specific kind of documents should be also apostilled in the relevant offices. Those are rather rare occurrences though. Most of the time on a regular bases people deal with such documents as vital and school records, copies of different personal and corporate documents, etc. Such documents should be apostilled in the office of the State Secretary of the relevant State. To be authenticated by the Secretary of State a document must be executed or certified by an authorized public official in that state, or notarized by a notary public commissioned in that state/county, depending on the type of a document. Sometimes it can be quite tricky to figure out how to obtain an apostille on specific document. In those cases you might need an expert assistance.

Q. HOW TO OBTAIN AN APOSTILLE?

A. Apostille can be obtained in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State of the required state either by mail or over-the-counter. The requirements may vary in different states. The document should be either (1) executed by authorized in that state public official, or (2) certified by the county clerk's office, and/or (3) notarized by a commissioned in the state/county notary public. There are specific requirements to a document for certification by the county clerk's office. Also, not any document can be notarized by a notary public. How to prepare document for authentication by apostille depends on the type of a document, and often requires competent assistance.

Q. HOW LONG DOES IT TAKE TO OBTAIN AN APOSTILLE BY MAIL?

A. Processing time depends on a state and a workload in the appropriate office, and can vary from a day to 2 weeks or longer.

Q. HOW MUCH DOES IT COST TO OBTAIN AN APOSTILLE?

A. Fees are different in different states and can be free (Indiana) or vary from \$1 (Michigan and Hawaii) to \$10 (Delaware, New York, etc.) and up to \$25 (New Jersey and Oklahoma) plus expedited fees where available (in Nevada 2-hour expedite service costs \$500 per apostille). Accompanying expenses include fees for the county clerk's certification, and notary fees. Mailing and

express delivery expenses and/or travel/gas/parking direct expenses plus time, devoted to this matter, as an indirect expense should also be considered.

Q. IS THERE ANOTHER WAY TO QUICKLY OBTAIN AN APOSTILLE?

A. Yes, there is. There are agents in major cities that provide expedited courier services, and obtain documents and/or certifications in different local official offices over-the counter. They receive and send customer documents by mail or express delivery service. Their fees may vary, and does not include mailing expenses.

Q. CAN A DOCUMENT BE PRESENTED IN A FOREIGN LANGUAGE?

A. It depends on the state notary public law and regulations, and county clerk's office running practice. In general, it is not prohibited by law, but can be precluded by public officials.

Q. APOSTILLE SAMPLES

[Apostille in Alaska, AK](#)

[Apostille in Arkansas, AR](#)

[Apostille in California, CA](#)

[Apostille in Colorado, CO](#)

[Apostille in Connecticut, CT](#)

[Apostille in Delaware, DE](#)

[Apostille in Florida, FL](#)

[Apostille in Illinois, IL](#)

[Apostille in Kentucky, KY](#)

[Apostille in Maryland, MD](#)

[Apostille in Massachusetts, MA](#)

[Apostille in Nevada, NV](#)

[Apostille in New Jersey, NJ](#)

[Apostille in New York, NY](#)

[Apostille in North Carolina, NC](#)

[Apostille in Pennsylvania, PA](#)

[Apostille in Texas, TX](#)

[Apostille Virginia, VA](#)

[Apostille in Washington DC, WA](#)

[Apostille in Wisconsin, WI](#)

1. ‘아포스티유 협약’ 이란 ?

○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 국가가 이를 확인(Legalization)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임.

- 명칭 :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 가입국 현황 : 미.영.불.독.러 등 92개국 (국가일람표 별첨)

- 우리나라에 대한 발효 : 2007. 7. 14

※ 2006년 9월 국회에서 비준되었으며 10월 협약사무국인 네덜란드 외무부에 기탁되어 협약가입국 이의제기, 준비기간을 거쳐 7.14일 발효하게 됨

2. ‘아포스티유 확인서’ 란

○ 해외에서 사용될 우리 공문서(공증문서 포함)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아포스티유 협약 규정에 따라 발급하여 주는 확인서

3.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른 효과

○ 한 국가의 공문서(공증문서 포함)가 다른 국가에서도 공문서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국의 국내법이 요구하는 일정한 인증요건을 갖추어야 함.

- 통상적으로 공문서(공증문서 포함)가 제출되어야 하는 국가의 외교.영사기관이 해당 공문서 서명자의 자격 또는 공문서에 날인된 인영.스탬프의 동일성을 확인 받아야 함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에 따라, 문서가 제출될 국가 주한공관 영사의 인증 대신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수속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됨

※ 예를 들면, 주한미국대사관의 영사확인(Legalization)을 위해 미국대사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미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음

○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우리 국민의 유학 및 상사주재 등 장기체류가 많고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가 큰 국가가 대부분 협약에 가입하고 있어 아포스티유 확인제도로 인한 우리 국민의 편의가 실질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임

※ 아포스티유 확인제도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로 관련 통계자료는 없으나, 주한공관 영사확인의 사전조치로 외교통상부장관이 행하는 영사확인이 2006년 13만건이며 매년 10%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연간 20만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

4.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 문서

○ 아포스티유 확인대상 문서는 정부기관이 발행한 문서와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임.

- 정부기관 발행 문서(공문서)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신분인 자가 기관장인 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발급한 문서. (예 : 호적등본, 납세사실증명서, 이혼판결문, 의약품허가확인서, 국공립학교발행 성적증명서 등)

- 공증문서 : 상기 정부기관 발행 문서가 아닌 문서로서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해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공증한 문서 (예: 사립학교 발행 증명서, 국공립병원이 아닌 병원 발행 진단서, 회사발행 문서, 은행 발행 문서, 화장품 제조자 증명서 등)

- 정부기관이 아닌 협회, 공사, 사립학교의 문서는 공증을 받은 후에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신청이 가능함

5. 아포스티유의 발급절차와 구비서류

○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을 위해 외교통상부는 공문서(공증문서 포함) 서명자의 서명 또는 공문서에 날인된 인영·스탬프의 진정성, 서명자가 행위하는데 근거한 자격, 동일성 등을 확인하여 상기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된 공문서에 부착시킴

○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서울 종로구 수송동 ‘코리안 리빌딩’ 4층에 있는 외교통상부 영사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신청 구비 서류>

- 아포스티유 발급신청서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수수료 500원

<우편 발급절차>

- 상기 신청 구비 서류와 반송용 우표 및 봉투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

송동 80 Korean Re 빌딩 4층 외교통상부 별관 영사민원실 아포스티유 담당자'에게 송부

6. 번역문

○ 아포스티유 발급대상 문서는 우리 공문서와 공증문서이며 공증받은 번역문도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대상이 됨

-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번역공증을 받는 방법, 번역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확인까지 받는 방법, 문서가 제출될 국가에서 번역공증을 받는 방법, 문서가 제출될 국가 우리 공관에서 번역인증(재외공관공증법에 따른 사서인증) 받는 방법이 있으며, 국가에 따라 번역문에 대한 공증요건이 다르므로 번역문을 제출할 국가의 공증 방법에 대해 사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예 : 독일의 경우 독일에서 번역하고 독일인 공증인이 공증한 번역문에 대해 효력을 인정함)

7. 서명 또는 인영.스탬프의 진정성 심사

○ 외교통상부는 정부기관 관인.인영 및 공증인의 서명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 정부기관 및 공증인의 인영.스탬프와 서명을 제출받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중에 있음

- 민원인이 아포스티유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된 공문서의 인영 또는 서명과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된 인영 또는 서명과 대조하게 됨

8. 협약가입국의 공문서 국내 사용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협약가입국 공문서(공증문서 포함)는 국내에서

우리나라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됨

- 따라서, 은행, 관공서, 회사, 법률사무소, 학교 등 외국공문서를 자주 대하는 기관 또는 업체는 협약가입국의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공문서(공증문서)에 대해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른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문서와 같은 효력을 인정해 주어야 함

- 외국공문서에 부착된 아포스티유의 진정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업체는 해당국가 주한공관 또는 외교통상부에 해당 아포스티유의 일련번호, 서명자 등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음

○ 아포스티유 확인서는 협약의 규정에 따라 배경 디자인은 상이할 수 있으나 확인서(Apostille) 서식은 협약가입국에서 동일한 서식을 사용함

협약에 의한 APOSTILLE 확인서 양식

APOSTILLE	
(Convention de La Haye du 5 octobre 1961)	
1. Country : 국가	
This public document	
2. has been signed by	(①)
3. acting in the capacity of	(②)
4. bears the seal/stamp of	(③)
Certified	
5. at (④)	6. (⑤)
7. by (⑥)	
8. No (⑦)	

9. Seal/stamp (⑧)	10. Signature (⑨)
------------------------	------------------------

① 문서발급자의 성명, ② 문서 발급자의 직위, ③ 문서발급기관, ④ 발급장소, ⑤ 발급일자,
⑥ Apostille 발급 기관, ⑦ 발급번호, ⑧ Apostille 발급기관의 스탬프, ⑨ Apostille 발급
담당자의 서명

9. 참고사항

○ 아포스티유 협약과 관련한 자료는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인 www.0404.go.kr에서 자세히 알 수 있으며, 아포스티유 확인 제도 전용 상담 전화 02-2100-7500 또는 영사콜 센터 02-3210-0404에 문의할 수 있음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2007. 6. 22 일 현재)

지역	국가명
아시아, 대양주	호주, 마카오, 홍콩,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쿡제도, 피지, 인도, 카자흐스탄, 마셜군도, 마우리제도, 사모아, 세이셸제도, 통가, 니우에 (18 개국)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마케도니아,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리히텐슈타인, 몰도바, 산마리노 (47 개국)
북미	미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안티과 바류다, 바하마, 바바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 빈센트, 트리니다드 토바고,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키츠네비스 (19 개국)
아프리카	사우스아프리카, 보츠와나,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말라위 (7 개국)
계	92 개국

아포스티유 관련 Q & A

1. 질문: 아포스티유 확인서란 무엇입니까 ?

☞ 해외에서 사용될 우리 공문서(공증문서 포함)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아포스티유 협약 규정에 따라 발급하여 주는 확인서를 말합니다.

한 국가의 공문서(공증문서 포함)가 다른 국가에서도 공문서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국의 국내법이 요구하는 일정한 인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통상적으로 공문서(공증문서 포함)가 제출되어야 하는 국가의 외교.영사기관이 해당 공문서 서명자의 자격 또는 공문서에 날인된 인영.스탬프의 동일성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에 따라, 문서가 제출될 국가 주한공관 영사의 인증이 폐지되고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수속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됩니다.

※ 예를 들면, 주한미국대사관의 영사확인(Legalization)을 위해 미국대사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미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음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우리 국민의 유학 및 상사주재 등 장기체류가 많고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가 큰 국가가 대부분 협약에 가입하고 있어 아포스티유 확인제도로 인한 우리 국민의 편의가 실질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 외국 공문서 인증폐지가 모든 나라에 적용 됩니까 ?

☞ 아닙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만 적용 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가 발행한 공문서나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사관 및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에 제출하는 우리나라 공문서와 우리나라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는 주한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질문: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나라를 말씀해 주십시오

☞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92개국 입니다.
(가입국가 명단 붙임 참조)

4. 질문: 아포스티유 제도를 시행하면 어떻게 편리 해지나요 ?

☞ 아포스티유를 시행하면 우리나라 공문서에 대한 주한공관의 인증 또는 외국 공문서에 대한 우리나라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인증 수속을 받는데 따르는 시간과 수수료를 절약 할 수 있습니다.

5. 질문: 아포스티유는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

☞ 2007년 7월 14일부터 시행 합니다.

6. 질문: 아포스티유를 발급을 수 있는 문서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우리나라 공문서와 우리나라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입니다. 공문서는 행정부 각부(처,청 및 위원회 포함), 국회, 법원발행 공문서, 지방자치단체 공문서, 국공립학교(초,중,고) 및 국립대학교 발행 공문서 등 입니다.

사립학교(대학포함), 회사, 단체와 개인의 사문서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7. 질문: 상공회의소의 인증을 받은 문서는 아포스티유의 대상이 됩니까?

☞ 상공회의소의 인증을 받은 문서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 경우 아포스티유의 대상이 됩니다.

8. 질문: 우리나라 공문의 번역문에 대해서도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먼저 번역문에 대해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에 따라서는 자국내에서 번역되고 자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번역문만 인정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민원인은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기 전에 번역문을 제출받을 국가가 우리나라에서 번역되고 공증받은 문서를 인정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합니다.

9. 질문: 아포스티유는 어디에서 발급합니까 ?

☞ 외교통상부 별관 1층 영사민원실에서 발급 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외교통상부 별관 Korea Re 빌딩 4층 영사민원실로 오시면 됩니다.

10. 질문: 우편으로 아포스티유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

☞ 예, 가능합니다. 다만 반송용 우표, 수수료 등을 아포스티유 발급 신청 구비 서류와 함께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외교통상부 별관 Korea Re 빌딩 4층 영사민원실 아포스티유 담당자 앞

11. 질문: 아포스티유 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는?

☞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포스티유 발급 신청서 (영사민원실 비치)
2.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3.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4. 수수료

12. 질문: 아포스티유 발급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

☞ 외교통상부 장관이 행하는 영사관계문서의 확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매1건당 500원입니다.

13. 질문: 미국처럼 국토가 넓은 나라에 살고 있는 동포가 우리나라에 제출할 미국 공문서에 대해서 미국의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공문서는 국무부(워싱턴) 에서 발급하며 주 (state)의 공문서나 공증인의 공문서는 각 주 정부 국무부 (secretary of state) 의 인증사무소에서 발급합니다. 재외동포는 우리나라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거주국 아포스티유 발급사무소 , 위치 및 연락처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14. 질문: 아포스티유 협정이 발효된 후 재외공관의 주재국 공문서확인(영사 확인)은 어떻게 되나요?

☞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이후에도 협약 가입국에서의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의 주재국 공문서 확인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단, 외교통상부는 아포스티유 협약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협약 발효일로부터 1년간 긴급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로서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만 주재국 공문서확인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협약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공문서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재외공관공증법상의 주재국 공문서 확인(영사확인)이 계속 운영됩니다.

15. 질문: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는 인감 위임장에 대해 우리나라 영사의 확인을 받았는데 7.14 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 변동이 없습니다.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서 말하는 영사확인 필요문서는 국내행정부처에서 업무처리상 필요로 하는 문서이므로 현재와 같이 시행됩니다.

16. 질문: 해외거주 동포가 대리인을 통해 한국내에서 일정한 법률행위(부동산 매매등 재산처분)를 하려면 위임장을 만들어야 하는 데 이런 경우에도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아야 합니까?

☞ 위임장은 현재와 같이 우리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른 사서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17. 질문: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외교통상부)에서는 아포스티유 발급대상 문서에 대해 무엇을 심사 합니까 ?

☞ 공문서를 발행한 공무원의 직위와 관인 또는 공증인의 인장과 서명의 진위 여부만 확인하며, 공문서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18. 질문: 아포스티유 서식은 나라마다 다릅니까?

☞ 아니요, 아포스티유 서식은 통일되어 있습니다.

19. 질문: 재외동포가 우리나라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출생, 사망 등을 신고 할 때 외국병원발행 출생증명서 등에 대해 거주국가의 아포스티유를 받은후 영사에게 제출해야 합니까 ?

☞ 아닙니다. 출생, 사망 등 호적관련 사항 등을 영사에게 신고할 때는 병원 발행 출생증명서에 대해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20. 질문: 협약가입국 국가(예: 일본) 국민과 결혼시 협약가입국 신분관리 관청에서 요구하는 우리나라 호적등본에 대해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아야 합니까?

☞ 그렇습니다.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1. 질문: 아포스티유에 대한 관련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 인터넷은 www.0404.go.kr 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국내에서는 02-2100-7500 또는 02-3210-0404로 문의하시거나 주한공관 또는 외국 주재 우리 공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